

# ‘SW산업 활성화’ 새 제도 시행

- ‘SW산업진흥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

올해 7월부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공인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뿐 아니라 발행권도 법으로 보장된다.

정보통신부는 급변하는 소프트웨어산업 환경에 대처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해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다음과같이 시행키로 했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조성

- 종전에는 일정조건을 갖춘 건물 단위로 지정하던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을 시설 위주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과 지역위주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구분, 서울소프트타운 등 진흥단지가 지정·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 및 설비제공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보아, 같은 세제상 혜택이 가능토록 하였다.

### ▶ 소프트웨어 표준화 활동 강화

- 산업계의 이해와 투자여력이 부족해 민간표준활동이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표준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표준화 동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 도입

- 소프트웨어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업체 또한 제품의 신뢰성을 공인받아 마케팅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 품질인증제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여 기술력이 뛰어난 영세 업체의 판로를 열어 주도록 했다.

###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제 제도화

- 협소한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에서는 동종업체간 경쟁 정도나 시장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 소프트웨어엑스포 등을 통하여 공개되었던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등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를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수요예보제를 제도화.

▶ **소프트웨어개발용역에 대한 계약제도 개선**

- 종전에는 소프트웨어개발용역에 대한 공공부문의 계약이 가격경쟁 위주로 체결되어 중소기업체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도 가격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발하였으나,
- 관련 개발용역제도를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성 평가위주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도입하여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체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경쟁을 가속화하도록 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기술적 보호조치 제도실시**

- 정보기술 발달과 함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또는 무력화하는 기술도 함께 발달하면서 저작권자가 부가한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법적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 법 조문에 기술적보호조치를 “식별번호·고유번호입력, 암호화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명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했다.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제도 신설**

- 프로그램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판매권을 가진 독점적·배타적 발행권자도 그의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 발행권자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계약법상 인정되어오던 배타적 발행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중 일부 권한만을 부여받은 배타적 사용권자의 재산권을 적절한 공시를 통해 보호하고, 배타적 발행권자에게는 양도, 질권설정 등을 통한 투자자금회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프로그램 유통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온라인을 통한 프로그램 등록 및 공보 실시**

-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 장치를 활용한 프로그램등록을 허용, 등록시간과 경비의 절감 등을 유도하고 프로그램공보를 전자적 매체를 통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 **관계공무원의 부정복제물 수거조치 등 실시**

- 현재 검찰·경찰과 일반행정직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불법복제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복제행위가 크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지속적인 단속이 중단될 경우 또 다시 불법복제행위가 되살아날 위험이 있어,

- 관계공무원에게 불법복제단속권을 부여하여 불법복제프로그램의 유통, 전송,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와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기와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수거·삭제·폐기를 할 수 있게 했다.

### ▶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가중

- 상습적으로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배포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해 프로그램 저작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두 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 문의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지식정보산업과 (전화번호 750-232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소프트웨어진흥과 (전화번호 750-2334)

## 한국통신, 전화메일 서비스 전국 확대

한국통신(대표이사 이계철)은 그동안 부가서비스로 서울 지역에만 제공되던 전화메일서비스를 차세대 지능망에 수용, 전국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한국통신은 전국서비스 상용화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오는 2월까지 일산, 분당지역을 대상으로 시험서비스를 실시한다.

전화메일서비스는 통화중이거나 외출중일 때 전화를 건 사람이 남긴 음성메시지나 연락번호를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받아보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망 전화메일서비스는 △메시지확인 기능뿐만 아니라 연락전화번호를 청취 후 자동연결을 선택해 연락 번호를 남긴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자동연결기능 △통화중이나 무응답인 경우, 통화중과 부재중을 분리하여 인사말을 남길 수 있는 기능 △빠빠번호뿐 아니라 원하는 전화번호를 지정해서 남겨진 메시지를 통보받을 수 있는 자동통보기능 등 더욱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된다.